



교무위원회규정

제정일	1980. 4.18
개정일	2019. 1. 1
개정차수	7차
담당부서	학사운영과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각 행정처·국장·산학협력단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09. 2.13, 2014. 1. 1, 2017. 6. 1, 2019. 1. 1)
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총장이 지명한다. (개정 2009. 2.13)
 ③ 총장은 필요에 따라 교무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 (개정 2009. 2.13)
- 제 3조 (위원장 및 부위원장)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 4조 (임기)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, 단 총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(개정 2009. 2.13)
- 제 5조 (기능)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 1. 학사운영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2.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
 3. 학생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(신설 2014. 5. 1)
 4. 학칙 및 학사내규 심의에 관한 사항 (신설 2019. 1. 1)
 5. 각 규정 등에서 심의 위임된 사항 (신설 2014. 5. 1)
 6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 6조 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인원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제 7조 (회의록)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- 제 8조 (시행) 총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학사운영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(개정 2009. 2.13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